##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6930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2201845	김현정의원	2024. 7. 17.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24, 9,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일부개정법률안	2204057	김선교의원	2024. 9. 1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11. 22.)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 4. 11. 28.)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 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 1항 및 제129조).
-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함(안 제115조제1항 및 제118조제1 항제1호).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제공받을"을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 중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한다. 제129조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	①		
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u>대차</u>	<u>재무</u>		
<u>대조표</u>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u>상태표</u>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u>대차대조표</u> 를 작	<u>재무상태표</u>		
성하여야 한다.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사업의 관리·운용) ① 중앙회	사업의 관리·운용) ①		
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			
업재기의 기회를 <u>제공받을</u> 수	<u>제공받으며, 재</u>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u>난으로부터 보호받을</u>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			
• 운용한다.			

(2)	(생	략)
(4)	1.78	ヨノ

-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 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 다.
  -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u>폐</u>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 금의 지급
  - 2. ~ 5. (생략)
  - ②·③ (생 략)
-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 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 에 사업보고서, <u>대차대조표</u>, 손 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 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1
<u>업 또는 재난 등</u>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